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25호 2017. 6. 23(금)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7-72호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 1
- 남원시 고시 제2017-73호 남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13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7-893호 도로지정변경공고 ----- 14
- 남원시 공고 제2017-899호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7-72호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시행계획 고시 (행정제 · 용궁 2제 · 입촌 2제)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숲벌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남 원 시 장

1. 목 적

- 가. 농산물 생산에 편리함 제공과 안전한 영농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시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로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 경쟁력 제고.

2. 사업계획

사업명	위치		사업비 (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비고
	시군	읍·면·동 (마을)			
- 행정제 용궁 2제 입촌 2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	3개소	8,230	- 제방보강 3식 - 여방수로(수로 등) 3식	
	남원 시	운봉읍 (행정마을)	2,684	- 제방보강 1식 - 여방수로(수로 등) 1식	
	남원 시	주천면 (외용궁마을)	4,042	- 제방보강 1식 - 여방수로(수로 등) 1식	
	남원 시	이백면 (입촌마을)	1,504	- 제방보강 1식 - 여방수로(수로 등) 1식	

※ 단,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3. 사업추진 계획기간 : 2017년 7월 ~ 2019년 7월(24개월)

4.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농정과 농업시설담당)

5. 수용 또는 사업대상 토지 사용 등의 명세서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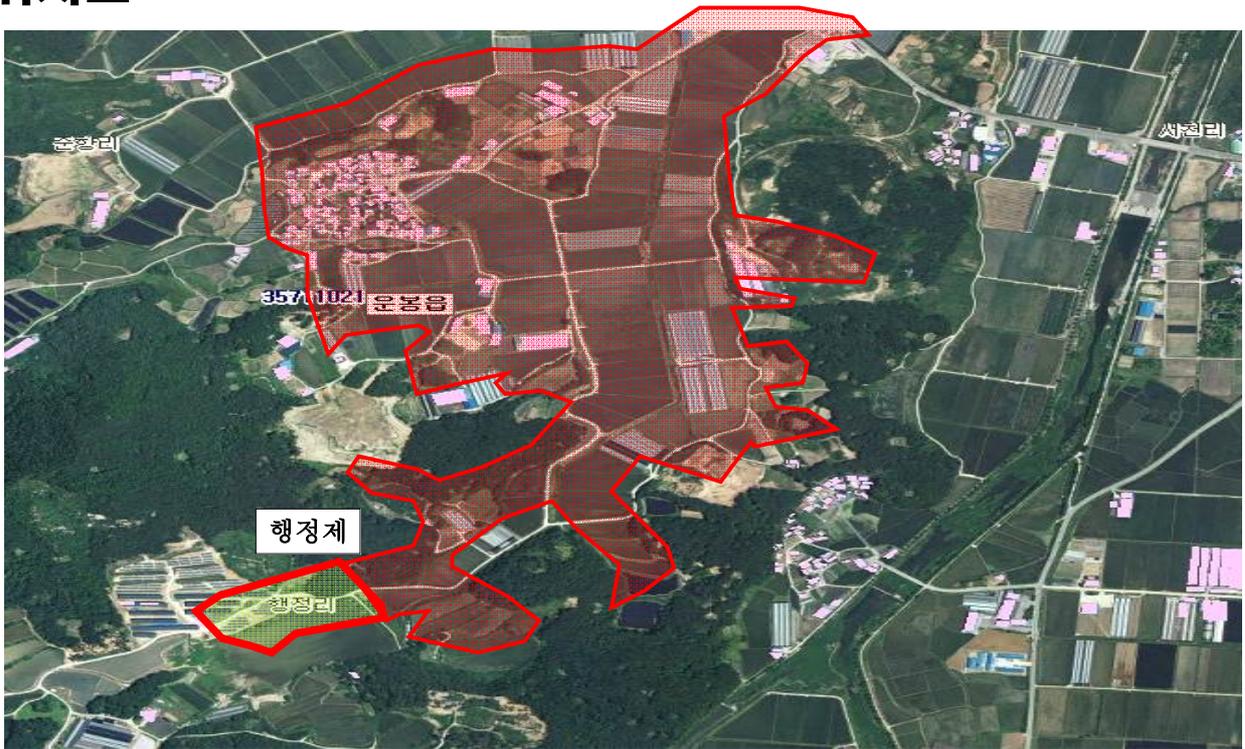
※ 사업계획평면도, 위치도, 용지도 : 붙임참조

6. 기타사항

가. 관계서류(설계도서 등) 및 편입토지 등의 세부 명세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농정과 농업시설 담당자로[☎ 063) 620-638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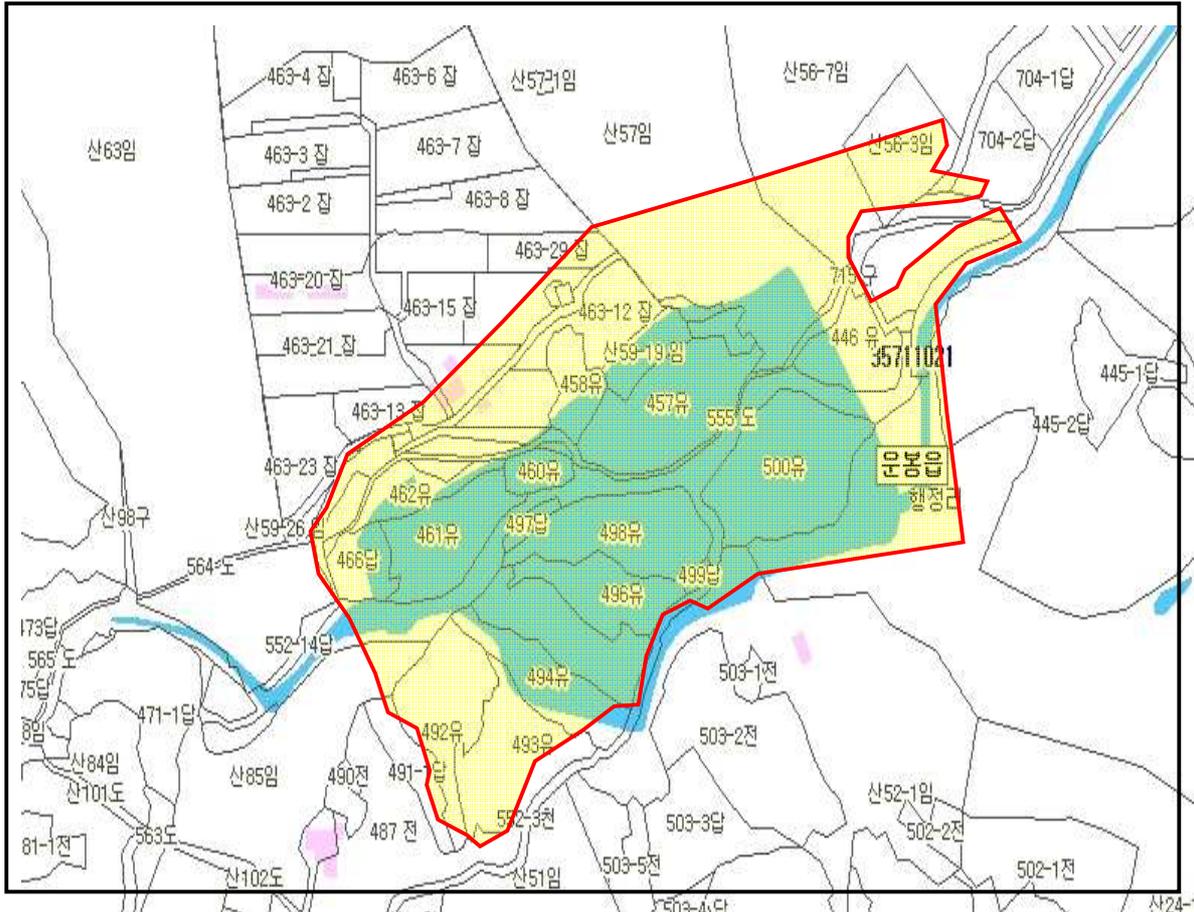
□ 위치도



※ 위치 :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00번지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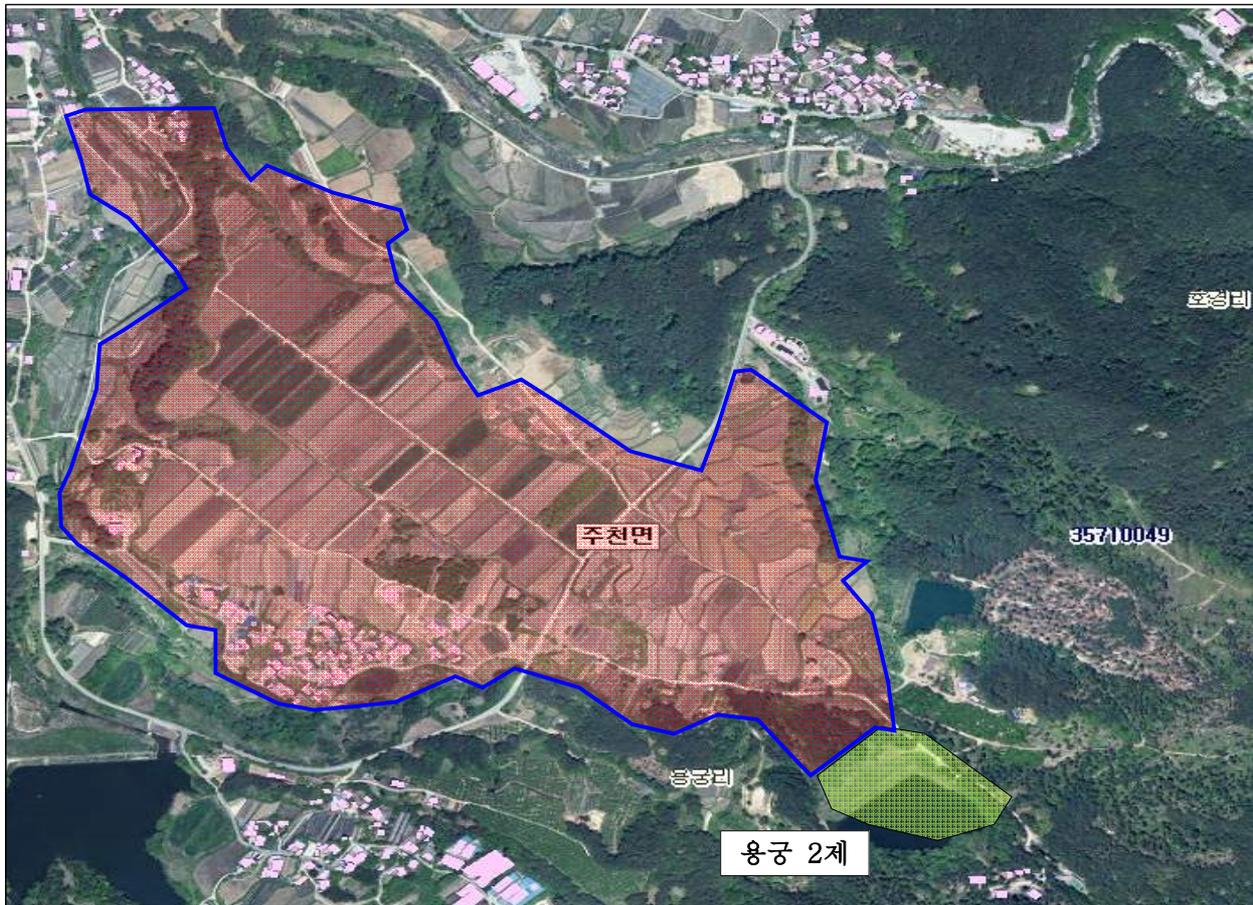
행정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용지도(예정지)

○ 위치 :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00번지일원



용궁 2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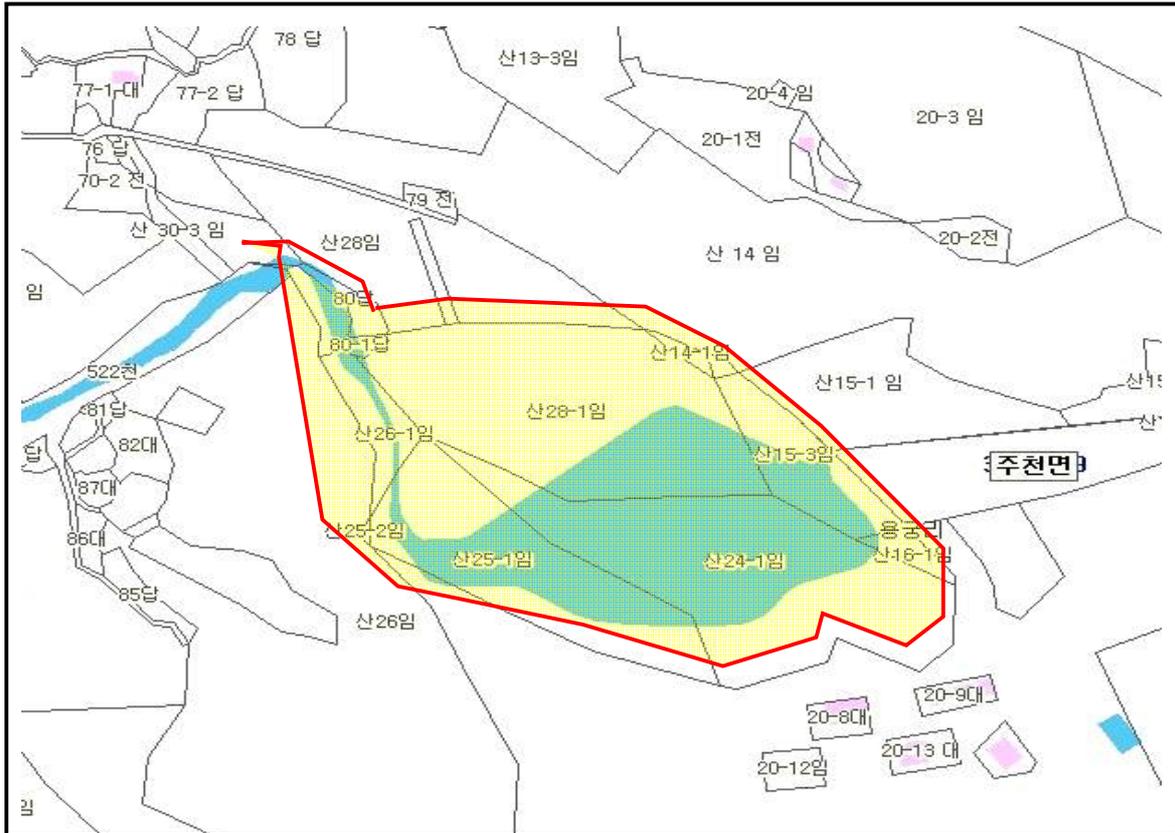
□ 위치도



※ 위치 :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산28-1번지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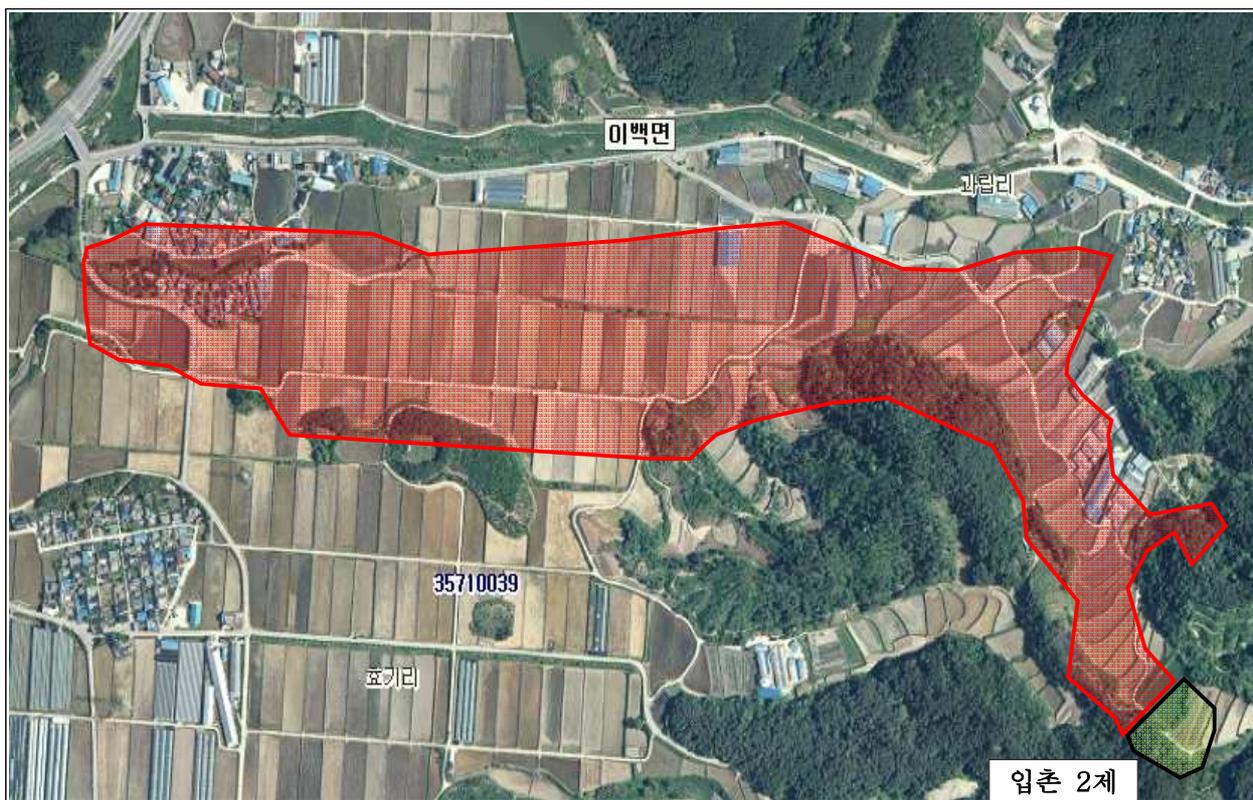
용궁 2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용지도(예정지)

○ 위치 :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산28-1번지일원



입촌 2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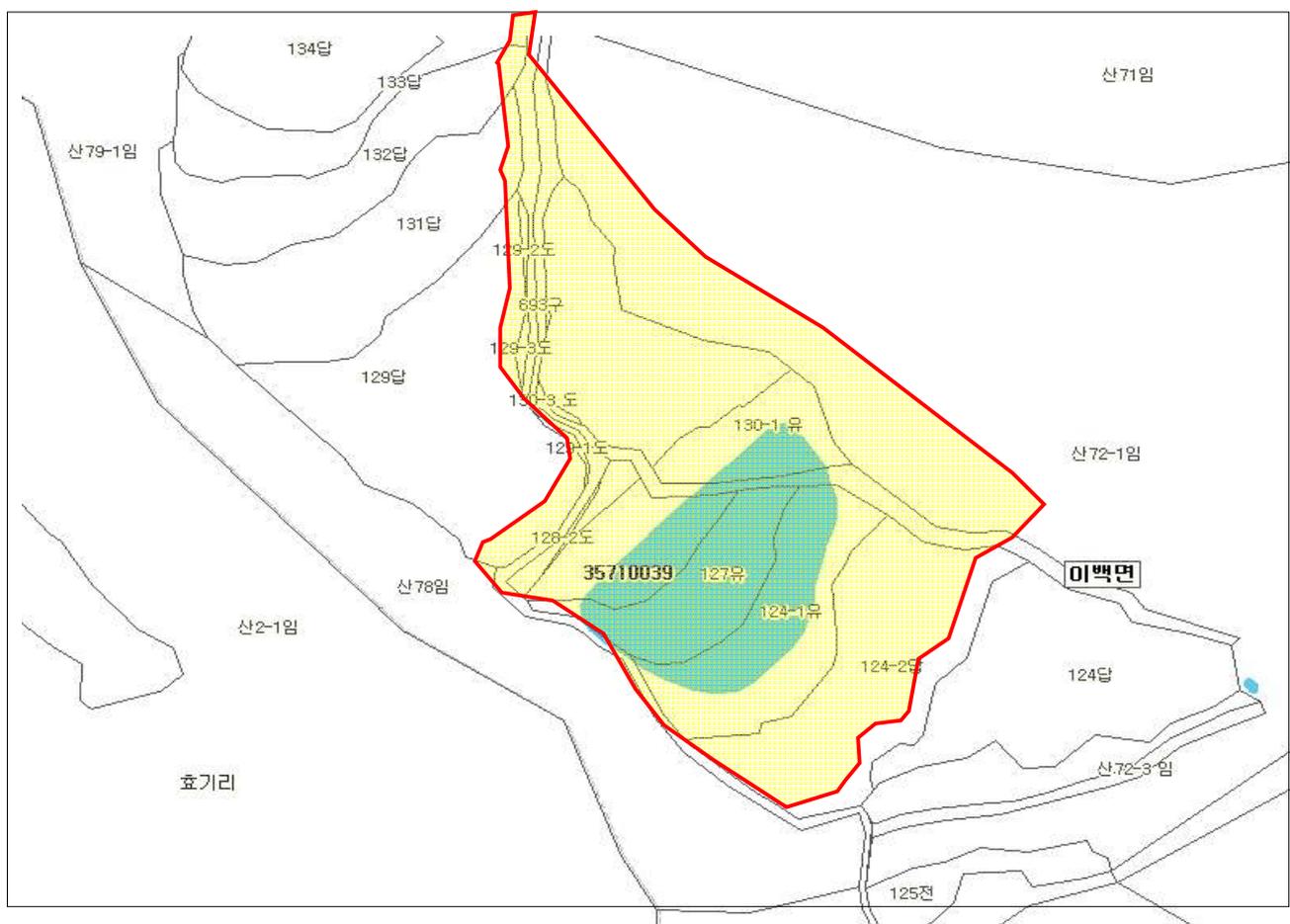
□ 위치도



※ 위치 : 남원시 이백면 과림리 124-1번지일원

입촌 2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용지도(예정지)

○ 위치 : 남원시 이백면 과립리 124-1번지일원



운봉 행정제 용지매수 조서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용지매수면적(㎡)		토 지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본번	부번	공부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산53	1	임	32,288	3,178	종중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445	2	답	16,109	145	종중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55		도	1,121	221	국(건설부)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산57		임	23,409	1,113	서**		
5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산56	7	임	15,211	680	이**		
6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산56	3	임	2,479	75	노**		
7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05		답	1,956	489	성**		
8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522	3	천	8,019	784	국(건설부)		
9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715		도	983	44	국(건설부)		
10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15		구	688	684	국(농림축산식품부)		
1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12		도	3,378	73	국(농림축산식품부)		
1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06		천	10,777	17	국(건설교통부)		
합 계						12	116,418	7,503			

검 토 의 견 서

(토지소유자)

제 목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관련 검토의견 (행정제, 용궁 2제, 입촌 2제)	
당사자	토지소유자 성명(명칭)	
	주소 (소유토지)	
토지소유자 및 주민, 농민 의견	※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후 사업을 추진 하고자함.	
기 타		
<p>『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 토 의 견 서 (농민·주민)

제 목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관련 검토의견 (행정제, 용궁 2제, 입촌 2제)	
당사자	건의자 성명(명칭)	
	주 소 (소유토지)	
토지소유자 및 주민, 농민 의견	<p>※ 농민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후 사업을 추진 하고자함.</p>	
기 타		
<p>『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원시 고시 제2017- 73호

남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7년 6월 23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쓰레기매립장 4단 제방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대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311일원

나. 사업규모 : 4단제방 증설 L=613m, H=5.0m, 토취량 85,148m³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환경과)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주소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28,991	128,991						
1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270		잡종지	2,148	2,148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
2		285		잡종지	4,925	4,925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
3		294	1	잡종지	7,895	7,895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
4		311		잡종지	42,281	42,281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
5		925		잡종지	42,230	42,230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
6		산28	3	임야	7,547	7,547	소*호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1,9동 ****호	-	-	-	-
7		산29	1	임야	7,007	7,007	나주**대수 중중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	-	-	-	-
8		산30	4	임야	1,115	1,115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
9		산30	5	임야	489	489	황*연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	-	-	-	-
10		산30	6	임야	5,002	5,002	황*연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	-	-	-	-
11		산31	2	임야	434	434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
12		산32		임야	6,137	6,137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
13		산37		임야	1,781	1,781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

◎ 남원시 공고 제 2017 - 893 호

도 로 공 고(변경)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23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m ²)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6-6	남원시 식정동 54-16, 54-30	김*길	2016-건축과- 신축신고-116	164	15	1.090	남원시 식정동 산39-1, 산44-2, 54-5	남원시 식정동 54-15, 54-29, 54-12	대지분할에 따른 지번변경 및 면적변경
2016-7	남원시 식정동 54-9, 54-11	김*길	2016-건축과- 신축신고-117	87.45	4	369	남원시 식정동 산39-1, 산44-2	남원시 식정동 54-15, 54-29	대지분할에 따른 지번변경 및 면적변경
2016-8	남원시 식정동 54-10	김*길	2016-건축과- 신축신고-133	36	5.1	182	남원시 식정동 산39-1	남원시 식정동 54-27	대지분할에 따른 지번변경 및 면적변경

남원시 공고 제2017-899호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교육체육과에서 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명칭 등을 보완·변경하여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경비 지원신청 절차 변경 (안 제6조)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
- 어린이집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

나.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촉 해제 신설 (안 제8조)

다. 심의위원회 수당 신설 (안 제9조의2)

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 변경 (안 제10조)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관내 농산물 유통업체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063-620-6714), 이메일(nkkim3@korea.kr),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축산과(☎063-620-6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6.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축 산 과 장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교육체육과에서 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명칭 등을 보완·변경하여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경비 지원신청 절차 변경 (안 제6조)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
- 어린이집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

나.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촉 해제 신설 (안 제8조)

다. 심의위원회 수당 신설 (안 제9조의2)

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 변경 (안 제10조)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관내 농산물 유통업체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6. . ~ 2017. 7.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제4항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제2조 제3호다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제2조 제3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를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경비지원에 있어서 당해연도”를 “경비를 지원할때 해당연도”로 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제2조에서 규정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를 “급식경비 지원기준과 방법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으로, “초·중학교는 전라북도남원교육청을 통하여, 보육시설,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어린이집은 이를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과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학부모 대표(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추천인)

제8조 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기타 위원회”를 “그 밖에 심의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

제한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을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을 “필요하다고 시장 및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남원시 관내 농산물유통업체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한 사항 등”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준용)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남원시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필요한 사항은”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축산물, 우수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
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이 인증한 농특산물

4.”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
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제
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급식 경비지원에 있
어서 당해연도 시 재정 상황 등
을 고려하여 형편에 맞게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남원
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

<삭 제>

바. -----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

4.-----란 -----

제3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현행
과 같음)

② ----- 경비를 지원할
때 해당연도 -----

제4조(지원대상) -----

1. ----- 따른

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
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
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
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
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
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제3조에 의한 급식경
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학교급식경비 등의 지원규모
와 방법 등은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

2. ----- 따른

3. -----
어린이집

4. 그 밖에 -----

제5조(지원방법) ① -----

-- 제2조에 따른 -----

② ----- 따른 -----

----- 급식경비 지원기준과 방
법에 -----
-----.

③ -----
-----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 -----

제6조(지원신청) ① -----
----- 받으려는

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라북도남원교육청을 통하여, 보육시설,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해당학교(보육시설) 재적학생수(아동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아동수)
-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 5. (생략)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어린이집은 이를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3. -----(어린이집) -----

- 4. -----
----- 드는 -----
----- 받으려는 -----
--
-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에 -----
 - ② -----
경우 -----
-----.
 - ③ -----
----- 필요한 -----
-----.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
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부시장 및 교육체육과장
- 2. 남원교육청 학무과장
- 3. (생략)
-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 9. (생략)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
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
하고, 간사 1인은 남원시 학교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
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
체가 추천한 자로서 시장이 위
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
연직 위원은 학교급식 업무 담
당과장과 전라북도 남원교육지
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
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삭 제>
<삭 제>

- 3. (현행과 같음)
- 4. 학부모 대표(전라북도 남원
교육지원청 추천인)

5.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
-----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하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이다.

<삭 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

수 있다.

<신 설>

⑥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회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 -- 필요한 ----- --.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1. ~ 4. (생략)
-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신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심의위원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
-----.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
- 필요하다고 시장 및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남원시 관내 농산물유통업체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
-- 필요한 사항-----

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
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
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
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
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④ (생략)

<신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

----- 자에게 -----

-----.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준용)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
- 필요한 사항은 -----

-----.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와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경우 및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관련조문

-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급식경비의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1,781백만원

- 초·중 무상급식 지원사업 : 1,446,299천원
 - 초등 무상급식 지원 : $3,773\text{명} \times 2,400\text{원} \times 190\text{일} \times 50\% = 860,244$
 - 중등 무상급식 지원 : $1,990\text{명} \times 3,100\text{원} \times 190\text{일} \times 50\% = 586,055$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 281,339천원
 - 유 지원 : $484\text{명} \times 175\text{원} \times 180\text{일} \times 68\% = 10,367\text{천원}$
 - 초등학교 : $4,135\text{명} \times 186\text{원} \times 190\text{일} \times 68\% = 99,369\text{천원}$
 - 중 학생 : $2,043\text{명} \times 249\text{원} \times 190\text{일} \times 68\% = 65,725\text{천원}$
 $255\text{명} \times 291\text{원} \times 190\text{일} \times 68\% = 9,587\text{천원}$
 - 고등학생 : $2,729\text{명} \times 257\text{원} \times 190\text{일} \times 68\% = 90,615\text{천원}$
 $57\text{명} \times 301\text{원} \times 190\text{일} \times 68\% = 2,217\text{천원}$
 - 특수초등 : $14\text{명} \times 186\text{원} \times 190\text{일} \times 68\% = 336\text{천원}$
 - 특수중등 : $21\text{명} \times 291\text{원} \times 190\text{일} \times 68\% = 790\text{천원}$
 - 특수고등 : $60\text{명} \times 301\text{원} \times 190\text{일} \times 68\% = 2,333\text{천원}$
- 농촌고교 급식 지원 : 50,654천원
 - 농촌고교 급식 지원 : $172\text{명} \times 3,100\text{원} \times 190\text{일} \times 50\% = 50,654\text{천원}$
-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 3,292천원
 -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 지원 : $254\text{명} \times 54\text{원} \times 240\text{일} = 3,292\text{천원}$

○ 연도별 예산

- 2018년 : 1,781백만원
- 2019년 이후 : 1,781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시,도비 예산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18년 : 시비 925백만원, 도비 856백만원
 - 2019년 이후 : 시비 925백만원, 도비 856백만원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781	1,781	1,781	1,781	1,781	8,905
국 비						
도 비	856	856	856	856	856	4,280
시 비	925	925	925	925	925	4,625
자체수입(입장료)						
기타수입						
세 출	1,781	1,781	1,781	1,781	1,781	8,905
초·중 무상급식지원	1,446	1,446	1,446	1,446	1,446	7,23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81	281	281	281	281	1,405
농촌고교 급식지원	51	51	51	51	51	255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3	3	3	3	3	1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781	1,781	1,781	1,781	8,905
	국비					
	도비	856	856	856	856	4,280
	시비	925	925	925	925	4,625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